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검 토 보 고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20호)
-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746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제2200720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1
3. 주요내용	2
II.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제2200746호)	5
1. 제안경위	5
2. 제안이유	5
III. 검토의견	6
1. 총괄검토	6
가. 법 제정의 목적 및 취지	6
나. 2개 특별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7
2. 주요 조문별 검토	15
가. 목적(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조)	15
나. 정의(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조)	16

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조)	21
라. 종합계획 수립 등(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24
마. 개발지구 지정 등(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30
바. 개발(발전)사업의 시행(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46
사. 추진 기구(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63
아.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8조 및 제29조)	71
자.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정동만의원안 제33조,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0조 및 제31조)	77
차.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정동만의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80
카. 산업 진흥 등(정동만의원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83
타. 특별회계(정동만의원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87
파.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정동만의원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90

하. 보칙(정동만의원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104
거. 부칙	106

I.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제2200720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정동만의원 등 16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2. 제안이유

남부권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관문으로 동북아의 중심지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기점이 되는 지정학적 중심지에 위치함.

또한 강,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부권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 간 상호 연계가 미흡했으며 수도권과 동서로 연결되는 광역교통망 등 사회기반시설 또한 부족한 실정임.

이에 남부권을 배경으로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

면서 상호 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남부권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남부권을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개발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이 법으로 목적으로 정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5조).

다.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 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부권개발사업이 남부권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촉구축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지구를 지정

할 수 있게 함(안 제9조).

바. 남부권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종합계획의 입안, 개발지구의 지정, 개발계획 등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남부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인·허가등의 의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준공검사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17조, 18조 및 22조).

아.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3조).

자.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을 설치함(안 제25조).

차.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카.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남부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으로부터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부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받는 경우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남부권종합개발청장이 남부권 강·섬 관광 활성화, 문화관광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함
(안 제33조 등).

하.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
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Ⅱ.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제220074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문금주·정점식의원 등 24인

나. 발 의 일 : 2024. 6. 20.

다. 회 부 일 : 2024. 6. 21.

2. 제안이유

남해안권은 섬, 갯벌, 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해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을 잇는 신해양·문화관광 중심지로 국가발전과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함.

그러나 이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성장으로 인하여 풍부한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남해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당면하게 되었고, 남해안권의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남해안권 발전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법 제정의 목적 및 취지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은 남부권(남해안권) 지역을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 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두 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부권(남해안권)은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양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강·섬·갯벌·해안 등 천혜의 자연 자원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계승·발전되어 온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의 신성장을 견인할 기회의 공간임.

그러나 이러한 천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연자원에 대한 활용과 지속가능한 보전·관리, 지역의 주요자원간 상호 연계가 미흡하여 남해안권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

별법」이 제정되었지만, 동 법은 사실상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남해안권 개발의 추진동력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동해안권 및 서해안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해안권에 대하여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2개 특별법안은 남해안권 전역을 대상으로, 국가 주도의 종합개발청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서 분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함으로써, 경제중심의 수도권과 행정중심의 중부권에 이어 남해안권이 신해양·문화관광 중심 거점으로 발전하는 것과 아울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임.

나. 2개 특별법안의 체계 및 주요내용

2개 특별법안의 체계를 살펴보면, 정동만의원안은 10장 7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11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2개 특별법안 체계 비교 】

구분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국가 등의 책무)

구분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종합계획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개발구역 지정 등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사업시행자 등)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제13조(사업시행자 등)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개발(발전) 사업의 시행	제15조(기초조사)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2조(준공검사 등)	제15조(기초조사)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2조(준공검사 등)
추진 기구	제23조(남부권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 설 치 등) 제25조(남부권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제26조(남부권청장의 업무)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제23조(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4조(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 치 등)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제26조(남해안청장의 업무)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특례	제28조(남부권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 한 특례) 제29조(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제28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 한 특례) 제29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강·섬관광 활성화지구 지정 및 특례	제33조(강·섬 관광 활성화)	제30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31조(남해안 강·섬관광 활성화의 관 계 법률의 적용 특례)

구분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	제30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1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제32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제32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제33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제34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산업 진흥 등	제34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제34조의2(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34조의3(해양·수산업의 진흥) 제34조의4(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34조의5(스포츠산업의 진흥) 제34조의6(웰니스산업의 진흥) 제34조의7(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제34조의8(물류산업의 진흥) 제34조의9(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제34조의10(도심항공교통 도입) 제3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3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37조(준용)	제35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제36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제38조(해양·수산업의 진흥) 제39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제40조(스포츠산업의 진흥) 제41조(웰니스산업의 진흥) 제42조(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제43조(물류산업의 진흥) 제44조(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제4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제4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제47조(준용)
특별회계	제3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3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4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41조(차입금) 제42조(예비비) 제43조(세출예산의 이월) 제44조(잉여금의 처리)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제51조(차입금) 제52조(예비비) 제53조(세출예산의 이월) 제54조(잉여금의 처리)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	제45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46조(보조금 교부 등) 제47조(자금지원 등)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49조(토자·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제50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51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부담금 등의 감면) 제56조(보조금 교부 등) 제57조(자금지원 등) 제5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9조(토자·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제6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 행위 등에 관한 특례) 제68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구분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제5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53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5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6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57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제6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9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6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제64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제65조(지역기업의 우대) 제66조(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
보칙	제5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60조(감독) 제61조(청문) 제62조(권한의 위임)	제7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1조(감독) 제72조(청문) 제73조(권한의 위임)
벌칙	제63조(벌칙) 제64조(양벌규정) 제65조(과태료)	제74조(벌칙) 제75조(양벌규정) 제76조(과태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개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개 특별법안은 남부권(남해안권) 개발 및 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 개발지구 지정,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기구로 남부권개발(남해안발전)위원회 및 남부권(남해안)종합개발청 설치, 특별회계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관계 법률 적용에 대한 특례를 받는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남해안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

【 2개 특별법안 주요내용 비교 】

구 분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체 제	10장 74개 조항 (가지번호 포함)	11장 76개 조항
적용 범위	남부권 (부산·전남·경남 관할구역)	남해안권 (부산·전남·경남 관할구역)
계획체계	종합계획 → 개발지구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인(개인)	
추진기구	남부권개발위원회 남부권종합개발청 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	남해안발전위원회 남해안종합개발청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규제 완화	개발계획 승인 시 - 15개 항목 승인·결정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 44개 항목 인·허가 의제	개발계획 승인 시 - 16개 항목 승인·결정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 44개 항목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11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외국인투자 및 민자유치에 대한 자금 등 지원	10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외국인 투자 및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자금 등 지원
관광진흥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강·섬관광 활성화	강·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구 분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투자촉진 관광진흥	투자촉진지구 지정 휴양·치유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해양·수산업, 수상레저산업, 스포 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 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도심항공교통 도입	투자촉진지구 지정 해양관광산업 , 휴양·치유관광산업, 문화관광산업, 해양·수산업, 수상 레저산업, 스포츠산업, 웰니스산업, 미래에너지산업, 물류산업 진흥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특별회계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그 밖의 사항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 조치 별칙 · 과태료 조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 조치 별칙 · 과태료 조항

다음으로, 2개 특별법안과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을 비교해 보면, 계획체계, 사업시행자, 규제 완화, 재정지원 등 기본적인 법체계가 유사하나,

주요 차이점은 ① 남부권(남해안권)에 대한 공간범위¹⁾, ② 추진 기구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동·서·남해안권 발전공동협의회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을 격상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남부권개발(남해안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남부권(남해안)종합개발청을 설치하는 것, ③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임.

1) 2개 특별법안의 남부권(남해안권) 범위: 부산·전남·경남 관할구역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남해안권 범위: 부산·전남·경남 33개 기초자치단체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주요 내용 】

구 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체 제	8장 47개 조항 (가지번호 포함)
적용 범위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 연결 기초자치단체 * 남해안선 연결 기초자치단체: 부산·전남·경남 33개 기초자치단체
계획체계	종합계획 → 개발구역 지정 → 개발계획 수립 → 실시계획 수립
사업시행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법인(개인)
추진기구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규제 완화	개발계획 승인 시 - 15개 항목 승인·결정 의제 실시계획 승인 시 - 42개 항목 인·허가 의제
재정 지원	6개 조세 및 5개 부담금 감면 보조금 교부
특별회계	-
해양관광 산업발전 관광진흥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첨단과학기술단지 해양관광산업 · 문화관광산업 진흥
그 밖의 사항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 조치 벌칙 · 과태료 조항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남해안권의 개발 및 발전이 필요하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현재 남해안권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포함되어 지원²⁾중이며, 제정안이 의결될 경우 「동·

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지원대상·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는 점,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동해안·서해안 지역이 포함된 점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정 경과 】

- 2006. 8. 30. 남해안균형발전법안 발의(신중식의원 대표발의)
- 2006. 9. 7. 남해안발전특별법안 발의(김재경의원 대표발의)
- 2006. 9. 29. 남해안발전 지원법안 발의(주승용의원 대표발의)
- 2006. 12. 14. 동해안광역권개발지원 특별법안 발의(윤두한의원 대표발의)
- 2006. 12. ~ 2007. 4.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 2007. 4. 19. 건설교통위원회,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결
- 2007. 11. 21. 법제사법위원회,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결
- 2007. 11. 22. 본회의,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안(대안) 의결
- * 2010. 4. 15. 해안 중심의 대외개방형 미래성장축에 내륙권의 실행력 확보 방안을 추가하기 위하여 이 법의 공간적 범위에 내륙권을 포함하여 제명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으로 개정

2)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4대 추진전략, 7개 프로젝트(총 96개 세부사업) 수립

2. 주요 조문별 검토

가. 목적(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조)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남부권을</u>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새로운 경제권과 세계적인 해양관광지역으로 <u>개발·이용 및 보전</u>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u>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u>남해안권을</u> 환태평양 시대를 여는 새로운 경제권을 형성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놓은 남해안권 지역의 <u>발전과 지원</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u>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u>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동만의원안과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공통적으로 남부권(남해안권) 지역을 개발·발전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04년 1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2004. 4. 1. 시행)되었으며, 2023년 6월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통합되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2023. 7. 10. 시행)되었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

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제정안의 “국가균형발전”은 “지역균형발전³⁾”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정의(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조)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남부권</u> ”이란 <u>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관할구역</u> 으로서 제6조의 남부권개발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2. ~ 5. (생략) 6. “ <u>도심항공교통</u> ”이란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기존 지상 교통체계를 벗어나 도시 간 이동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및 관련 제반사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남해안권</u> ”이란 남해안에 연접한 <u>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관할구역</u> 을 말한다. 2. ~ 6. (생략)

제정안의 적용범위인 “남부권(남해안권)”과 관련하여, 정동만의원안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구역으로서 남부권개발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문금주·정동만의원안은 남해안에 연접한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관할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정의규정은 해당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는 규정이고, 해당 법률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사용 빈도가 높은 용어, 다른 용어들을 기술하는 데 있어 토대가 되는 용어 및 일반적인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되는 용어 등의 뜻을 명확히 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는 기능⁴⁾을 함.

그런데, 정동만의원안의 “남부권”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전역⁵⁾ 중 남부권개발종합계획에서 지정하는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남부권개발종합계획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6조⁶⁾에서는 “남부권” 지정에 대한 내용은 있지 아니함.

또한,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의 “남해안권”은 수식어인 ‘남해안에 연접한’이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를 꾸미는 경우⁷⁾와 ‘부산광역시

4)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5., p.244 참조

5) 총 56개 기초자치단체: 부산광역시(16개), 전라남도(22개), 경상남도(18개)

6)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 (정동만의원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부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한대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 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부권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부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이 경우 “남해안권”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전역(56개 기초자치단체)으로 해석될 수 있음.

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 관할구역’을 꾸미는 경우⁸⁾에 따라 공간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

따라서,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⁹⁾와 같이 정의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거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5조제3항¹⁰⁾과 같이 지정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 명확하게 위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법안의 적용범위인 “남부권(남해안권)”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안은 내륙지역을 포함한 56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구성¹¹⁾되는 것으로 보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남해안권”은 남해안선에 연결한 기초자치단체로서 부산광역시 10개, 전라남도 16개, 경상남도

8) 이 경우 “남해안권”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전역 중 남해안에 연결한 기초자치단체(33개)로 해석될 수 있음.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새만금사업지역”이란 새만금방조제의 완성으로 형성되는 방조제와 방조제 안쪽 토지, 호소(湖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서·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서해안·남해안선에 연결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입안) ③ 종합계획안의 입안절차와 방법, 제1항에 따른 해안권 또는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의 “남해안권”은 수식어인 ‘남해안에 연결한’이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를 꾸미는 경우로 가정함.

7개 등 33개¹²⁾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구성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2007. 12.)될 당시 남해안권을 중심으로 하는 3개의 법안¹³⁾이 발의되었는데, 3개의 법안 모두 “남해안권”을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관할구역으로 규정하였지만, 국회의 심사과정에서 해안선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내륙지역의 지방자치단체를 전부 포함할 경우 너무 범위가 넓다는 의견¹⁴⁾을 고려하여 “남해안권”은 해안선에 연접한 33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정해짐.

그런데, 제정안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경상남도 전역을 “남부권(남해안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실질적인 남부권(남해안) 발전을 위해서는 관광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신산업 육성이 필요하므로 적용범위를 내륙권까지 확대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제정안의 적용범위를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할지, 내륙권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2) 부산광역시(10개):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강서구, 수영구, 기장군
전라남도(16개):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함평군, 영광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상남도(7개):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13) 남해안균형발전법안(신중식의원 대표발의, 174819), 남해안발전특별법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174860), 남해안발전 지원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175086)

14) 제265회국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p.17

한편, 정동만의원안 제2조제6호에서는 “도심항공교통”을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기존 지상 교통체계를 벗어나 도시 간 이동효율성을 극대화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및 관련 제반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도심항공교통의 도입·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3. 10. 24.)되어 시행(2024. 4. 25.) 중임.

또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15)에서 “도심항공교통”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므로, 용어 정의의 일관성 제고 측면에서 정동만의원안 제2조제6호는 상기 법률에서의 정의와 내용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15)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심항공교통”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별적으로 또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도심형항공기, 버티포트 및 도심항공교통회랑 등의 이용·관리·운영체계를 말한다.

다. 다른 계획과의 관계(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조)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u>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u>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u>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u>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u>종합계획은</u>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u>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u> 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정동만의원안은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해,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종합계획에 대해,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추가로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종합계획은 남해안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기본법」에 따르면 국토계획¹⁶⁾은 ①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16) 「국토기본법」

제6조(국토계획의 정의 및 구분) ② 국토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종합계획, 초광역권계획, 도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지역계획 및 부문별계획으로 구분한다.

국토종합계획, ②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 종합계획, ③ 시 또는 군 등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¹⁷⁾은 시 또는 군 등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간구조, 인구배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최상위 공간계획임.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되고,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 교통, 상하수도, 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¹⁸⁾하

-
1. 국토종합계획: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 1의2. 초광역권계획: 지역의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여 설정하거나 「지방자치법」 제199조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도·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이하 “초광역권”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도종합계획: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
 3. 시·군종합계획: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하여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문화 등에 관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도시·군계획(이하 생략)
- 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②~③ (생략)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

여야 함.

따라서,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발전사업)의 종합계획과 실시계획은 계획인구 예측 및 배분, 토지이용, 기반시설, 환경보전, 경관 등 각 부문별 계획이 통합·조정된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국토교통부는 「국토기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으로 규정되는 국토계획체계를 고려하여 남해안발전사업의 계획 등을 수립할 경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뿐 아니라, 도시·군기본계획도 단서 규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¹⁹⁾하고 있음.

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

1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종합계획은 해안권 및 내륙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라. 종합계획 수립 등(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25조에 따른 남부권종합개발청의 장(이하 “<u>남부권청장</u>”이라 한다)은 남부권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종합계획을 수립</u>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부권 개발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부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부권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제25조에 따른 남해안종합개발청의 장(이하 “<u>남해안청장</u>”이라 한다)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u>하여야 하며,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 등 필요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남해안권 도시계획, 강·섬 발전 및 특색화 사업, 숲 정원 조성에 관한 사항 3. 국립공원 관리,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환태평양 관광휴양 거점구축, 광역관광개발 등 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미래형 항만물류산업 육성, 해양치유단지, 갯벌 자원화 등 해양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 6. 반도체·이차전지·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도로·항만·공항·<u>버티포트</u>·연륙교·연도교·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 8. 남해안권발전사업 등에 필요한 투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부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남부권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u>남부권개발위원회의</u>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산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남부권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남부권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남부권청장은	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9.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문화·관광 및 교통 등의 연계·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11.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12. 연차별 재원조달 대책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남해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u>남해안발전위원회의</u> <u>심의를</u>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부산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대한 사항을 남해안청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통보) 남해안청장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고, 관계 <u>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u> 하여야 한다.	제6조에 따라 결정·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고시</u> 하고, 관계 <u>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u> 하여야 한다.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남부권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 <u>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u> ”이라 한다)을 <u>수립</u> 하거나 <u>변경</u> 할 수 있다.	제8조(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 내 토지용도 상호간에서로 연계하거나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수도 또는 공항· <u>버티포트</u>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이하 “ <u>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u> ”이라 한다)을 <u>수립</u> 하거나 <u>변경</u> 할 수 있다.
② 남부권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남해안청장은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종합계획 수립·통보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조와 제7조는 남부권개발위원회(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종합계획을 수립·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안에는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문금주·정점식의원안에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남해안권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법안에 수립 주기를 명시하여 계획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

또한, 제정안의 종합계획이 중장기 발전계획임을 고려할 때 문금주·정점식의원안과 같이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는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한편,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남부권(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등 13개 항목을 규정하고 있음.

정동만의원안과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대부분 같은 포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

여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버티포트’를 추가하여 규정함.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²⁰⁾에 따른 “버티포트”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을 말함.

도심항공교통이 도입·확산되면서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을 조성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제정안의 종합계획에 ‘버티포트’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임.

2)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8조는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지구와 그 밖의 지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항만 등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조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20)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버티포트”(Vertiport)란 도심형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시설과 사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종합계획에는 도로·항만·공항 등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정비와 확충에 관한 사항과 남부권(남해안권) 인근 지역과의 교통 등의 연계 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이러한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남부권 청장(남해안청장)이 광역단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도로와 철도의 경우 ① 법정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²¹⁾”과 “국가철도망구축계획²²⁾” 등에 따라 도로망과 철도망을 건설·구축하고 있으므로 해당 망계획을 통해 계획·추진·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② 개별법에 국가도로·철도계획에 우선하는 광역기반시설계획을 둘 경우에는 선례가 되어 그 밖의 지역에서도 특별법안 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③ 무분별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재정낭비가 우려되므로, 안 제8조제1항에서 ‘도로’와 ‘철도’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21) 「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하 “철도망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철도망계획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 1의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6조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마. 개발지구 지정 등(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남부권 청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u>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u>중앙도시계획위원회</u>,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국립공원위원회</u>(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u>건축위원회</u>와 제23조에 따른 <u>남부권개발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개발지구를 지정</u>할 수 있다.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u>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u>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u>중앙도시계획위원회</u>,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u>국립공원위원회</u>(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u>건축위원회</u>,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u>중앙연안관리심의회</u>(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23조에 따른 <u>남해안발전위원회의</u>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u>개발지구를 지정</u>할 수 있다. 개발지구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1. 남부권개발사업이 남부권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남부권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남부권개발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남부권개발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부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② (생략)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1. 남해안권발전사업이 남해안 지역의 화합을 선도하고 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공익성을 갖출 것 2.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사업일 것 3. 남해안권발전사업이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여건에 부합할 것 4. 남해안권발전사업의 투자계획 등이 실현 가능할 것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할 것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개발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남해안권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개발지구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③ ~ ⑨ (생략) ⑩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 및 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①·② (생략)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① ~ ④ (생략)	제11조(개발지구 지정의 해제) ① ~ ④ (생략)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⑥ (생략)	제12조(행위 등의 제한) ① ~ ⑥ (생략)
제13조(사업시행자 등) ①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부권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남부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남부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남부권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남부권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제13조(사업시행자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남해안청장이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류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남해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남해안권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남해안발전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남부권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u>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 (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u>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남부권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남해안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u>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 (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u>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 지역에서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u>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u>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 지역에서 개발지구가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u>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u> 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10. 「수도법」 제5조에 따른 <u>수도정비계획의 변경</u>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10.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u>예정지구</u>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1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 남부권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u>총괄계획가</u>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u>도시재정비 촉진</u>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11.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u>택지개발지구</u>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3.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14.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5.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6.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 남해안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u>총괄계획가</u>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u>도시재정비 촉진</u>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을 준용한다.

1) 개발지구 지정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9조는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을 개발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남부권개발위원회(남해안발전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정동만의원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남부권개발위원회 등 4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정동만의원안의 4개 위원회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를 추가하여 5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함.

【 개발지구 지정 전 위원회 심의 】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립공원위원회 ○ 건축위원회 ○ <u>남부권개발위원회</u>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립공원위원회 ○ 건축위원회 ○ <u>남해안발전위원회</u> ○ <u>중앙연안관리심의회</u>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국립공원위원회 ○ 건축위원회 ○ <u>국토정책위원회</u>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23)에 따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고, 국립공원위원회는 「자연공원법」 제9조 및 제10조24)에 따라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이며,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25)에 따라 건축물의

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3. 도시·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

24) 「자연공원법」

제9조(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제10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공원위원회를 두고, 도에 도립공원위원회를, 광역시에 광역시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두며, 군에 군립공원위원회를, 시에 시립공원위원회를, 자치구에 구립공원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③ (생략)

제10조(공원위원회의 심의 사항) 각 공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연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국립공원위원회만 해당한다)
3.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자연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5)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임.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국립공원위원회, 건축위원회, 남부권개발위원회(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이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²⁶⁾에도 비슷한 내용²⁷⁾이 규정되어 있음.

그리고, 개발지구를 지정하기 전에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문금주·정점식의원안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3조 및 제27조²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사업 대상 매립지를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자연공원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원위원회(같은 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 및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발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건축분야 위원 2명 이상이 참석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2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제1항의 국토정책위원회는 「국토기본법」 제26조에 따라 국토계획 및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로서 제정안의 남부권개발위원회 또는 남해안발전위원회와 유사한 위원회로 볼 수 있음.

2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매립·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연안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하 “매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매립기본계획에의 반영 요청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

반영하려면,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4조에 따라 남해안청장이 ‘개발계획’ 승인 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면 되므로, 개별 개발지구 지정 단계에서 별도의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의결 절차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임.

2) 사업시행자 지정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3조는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권발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중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함.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사업시행자를 지정²⁹⁾하지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³⁰⁾하고 있음.

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매립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와 제26조에 따라 수립·고시된 매립기본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검토하고, 검토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9)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1조(사업시행자 등) ①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5.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모두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게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사업을 총괄하는 전담기구로 설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3) 개발계획의 승인 등

가) 개발계획의 승인·결정 등의 의제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4조제4항은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개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각 호의 개별 법률에 따른 계획의 승인·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 법률에 따른 관련 계획의 변경 등에 대한 의제 규정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³¹⁾에서는 15개 항목에 대하여

3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시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하나 이상이 출자한 비율의 합이 100분의 50을 넘는 법인

3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④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동만의원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의제 항목과 동일하며,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의제 항목에 「수도법」 제5조³²⁾에 따른

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한정하여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결정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은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시·군지역에서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군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해당 시·군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8.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0.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1.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13.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15.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32) 「수도법」

제5조(수도정비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도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수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⑦ 수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대체수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전용수도는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 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실시 순위
8. 수도관의 현황 조사 및 세척·갱생·교체에 관한 사항
9. 수도사업의 경영 및 재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광역상수도과 지방상수도를 연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지역의 통합 급수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추가하여 16개 항목에 대하여 의제 규정을 두고 있음.

“수도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하는 계획임.

환경부에 따르면 중·대규모 수도사업은 최상위 수도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과 부합하여야 수도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비상 연계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수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개발계획 수립 시 용수공급 가능 여부 및 수도시설 계획 등에 대해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함.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제 항목에 “수도정비계획”의 변경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그리고, 의제 항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 11. 수돗물의 수질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 12.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3.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수도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
 - 14. 인접 지방자치단체와의 지방상수도 사업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15. 그 밖에 수도시설의 운용 및 수도사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개발계획의 승인·결정 등의 의제에 대한 행정부처 의견 】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 용도지역·구역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토지의 용도, 밀도 등을 구분한 토지이용의 기본 체계로 개별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의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 시·군의 관할 구역 전체에 걸쳐 계획인구 예측 및 배분, 토지이용, 기반시설, 도시재생·정비, 환경보전, 경관 등 각 부문별 계획이 통합·조정된 도시·군기본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제반기능의 부조화, 지역 간 불균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실시	국토교통부	○ 도시교통문제의 사전적 관리를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절차가 필수적이므로, ‘교통영향평가’는 의제대상에서 삭제가 필요함.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해양수산부	○ 항만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국가 화물 물류의 수요 예측·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남해안개발계획 고시를 통해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변경이 될 경우 국가물류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른 공원계획의 변경	환경부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 및 공원시설(종류 및 규모)에 한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발계획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원계획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음.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환경부	○ 중·대규모 수도사업은 최상위 수도계획인 '국가수도기본계획'의 광역상수도 설치계획과 부합하여야 수도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비상연계방안 마련 등 효율적인 수도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개발계획 수립시 용수공급 가능 여부 및 수도시설 계획 등에 대해 환경부의 검토가 필요함.

※ 자료: 국토교통부

나) 총괄계획가 위촉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은 종합계획에 따른 개발계획 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³³⁾에도 유사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음.

3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④ (생략)

⑤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수립의 전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인 자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면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제22조에 따른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공동협의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에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그리고, 정동만의원안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과 같이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의무 및 권한사항, 그 밖의 총괄계획가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개정으로 총괄계획가 위촉 등에 관한 내용은 같은 조 제5항³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³⁵⁾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항은 문금주·정점식의원안과 같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5항을 준용할 필요가 있음.

3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의 모든 과정을 총괄 진행·조정하게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도시설계·건축 등 분야의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3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총괄계획가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위촉한 총괄계획가(이하 “총괄계획가”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이하 “계획수립권자”라 한다)에게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괄계획가는 자신이 수립을 총괄한 재정비촉진계획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총괄계획가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시 계획수립권자가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총괄계획가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⑥ 총괄계획가의 위촉·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한다.

바. 개발(발전)사업의 시행(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5조부터 제22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5조(기초조사) ① ~ ④ (생략)	제15조(기초조사) ① ~ ④ (생략)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남부권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u>남부권청장의 승인</u>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남해안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u>남해안청장의 승인</u> 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1.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2.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지적도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3.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남부권개발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5.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또는 도면
② 남부권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남해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u>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u> 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③ <u>제1항 및 제2항</u> 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0.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5.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0.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발전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발전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1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7.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20.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2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2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22.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23.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24.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26.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발전사업의 시행허가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8.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29.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허가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27.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9.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30.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3.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5.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6.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7.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u>정한다)</u> 3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3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7.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8.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9.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3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0.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40.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u>항만발전사업</u>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u>항만발전사업실시계획</u> 의 승인	4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u>항만개발사업</u>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u>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u> 의 승인
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2.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4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43.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43.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4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44.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② ~ ⑤ (생략)	② ~ ⑤ (생략)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1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19조(토지의 직접 사용)
①· ② (생략)	①· ② (생략)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제20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① ~ ⑤ (생략)	① ~ ⑤ (생략)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제21조(공공시설의 귀속)
① ~ ④ (생략)	① ~ ④ (생략)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2조(준공검사 등) ① ~ ⑥ (생략)	제22조(준공검사 등) ① ~ ⑥ (생략)

1) 실시계획의 승인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6조는 사업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승인하도록 하는 내용임.

실시계획 승인권자에 대한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³⁶⁾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³⁷⁾하고 있음.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남부권(남해안권)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의 지원과 개발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전담기구인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방

3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 6. (생략)

3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제20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고시되었을 때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승인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2) 인·허가등의 의제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7조는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각 호의 개별 법률에 따른 협의·승인·허가·인가·신고·해제·심사·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각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행정절차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정동만의원안과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각각 44개의 의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40개 의제 항목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3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제 항목과 동일함.

38)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인·허가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14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삭제 <2010. 4. 15.>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도시·군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에 부합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1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4.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지정의 해제
1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1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점용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22.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2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2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27.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2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
30.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31.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3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공하수도 분뇨처리시설에 한정한다)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34.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3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7.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8.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9.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 인·허가등의 의제 항목 비교 】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	---------------------------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등 40개 항목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 허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장, 탐방로 등 공원시설의 종류 및 그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정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 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	○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 등의 승인
 41.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4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4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환경영향평가법」 제 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승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5조제22호에서 「자연공원법」 제20조에 따른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의 시행허가”에 대한 의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공원과 공원시설(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공원관리청의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계획의 결정이나 변경의 고시가 이루어진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연공원법」상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³⁹⁾임을 고려한 것으로, 정동만의원안 제17조제1항제29호는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17조제1항제30호와 같이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또한, 인·허가등의 의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제출한바, 관계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

39) 「자연공원법」

제19조(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 ①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관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원관리청이 한다.

② 공원관리청은 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원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인·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관계 부처 의견 】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기획재정부	○ 사용허가는 재산관리 기관(도로·항만·산림 등의 관리청)이 재산현황, 활용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결정할 사안으로, 사용허가시 사용료·사용기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이 필요하여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사용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국토교통부	○ 도시계획은 도시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으로 개별 사업법으로 제한 없이 의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토계획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서 규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중 다목(기반시설 설치등), 마목(지구단위계획)에 한해 의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국토교통부	○ 용어 오류 수정(택지발전사업실시계획 →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8조에 따른 인가·허가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국토교통부	○ 남해안권은 부산광역시·전라남도 및 경상남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당 시·도내 도시교통권역*으로 한정하여 건설·운영되는 도시철도에 부합하지 않아, 의제 대상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도시교통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교통권역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 승인과 같은법 제11조에 따른 인가·허가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국토교통부	○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은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국가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함으로,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철도사업도 「철도건설법」에 따른 국가 철도망구축을 통해 검토가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행정안전부	○ 공유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와 사용허가 기간 등 구체적 사항의 결정이 필요하여 실시계획 승인시 사용허가를 의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의제 처리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한다는 전제조건이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내용이 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국방부	○ 인허가 의제 대상인 군 협의는 통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로 의제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는 인허가 의제 대상이 아니며, 보호구역 내 제9조에 의한 금지 사항을 허용할 경우 군 작전 수행에 지대한 악영향이 있으므로 제9조 관련 내용은 삭제 필요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허가,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산업통상 자원부	○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 허가는 국가 전력수급 및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바, 허가가 의제될 경우 충분한 검토가 곤란함. ○ 또한, 전기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계통 연계 가능성 검토, 관계기관 의견수렴, 전기위원회 심의 등이 필요하며, 사업자는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을 보완해가며 사업허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소요되는바, 단순 의제로써 허가를 진행하기는 어려움.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발전사업의 시행허가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법」 제23조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실시계획 단계) 추진을 위해선 「어촌·어항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기본계획 단계) 반영이 선행되어야 함. ○ 그러나, 동 제정법에는 기본계획 단계인 어항개발계획 반영에 대한 내용은 없이 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만을 의제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바, 어항개발계획 반영 없이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는 불가하므로 동 의제조항은 존재 의미가 없어 삭제가 필요함.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해양수산부	○ 항만개발사업의 시행 허가 및 실시계획의 승인은 「항만법」에 따라 관리청에서 담당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권한이 관리청이 아닌 남부권(남해안)종합개발청에 중복 위임되게 되면 인허가 관리, 개발사업 추진, 관리 과정에서 많은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높아 관련 규정은 삭제가 필요함. ○ 또한 남부권(남해안)종합개발청 또는 민간기업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를 원하는 경우 현재도 「항만법」에 명시된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인·허가등의 의제사항	기관	제출 의견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업 허가	해양수산부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심층수법”) 제16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를 받은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것임. ○ 면허권을 위한 준비서류와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서류는 그 종류 및 내용이 다르며, 더욱이 면허 심사 시에는 해양환경피해 방지 계획, 권리자 보상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면허심사위원회에서 그 면허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제정안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하게 된다면, 해양심층수개발업면허 취득을 위한 그 어떤 검토나 심사를 받지 않은 자가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효과만을 취하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므로 해당 내용은 삭제가 필요함.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농림축산 식품부	○ 용어 수정(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허가 ※ 정동만의원안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을 관장하는 국가유산청은 현상변경 허가 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행위허가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에 현상변경 허가사항의 인·허가 등 의제 처리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자료: 국토교통부

사. 추진 기구(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3조(남부권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위원회</u>를 둔다. ② 남부권개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남부권 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5.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남부권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7.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8.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남부권개발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	제23조(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위원회</u>를 둔다. ② 남해안발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3.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개발지구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4. 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5.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남해안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 6. <u>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남해안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사항</u> 7.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8.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9. 해양자원을 활용한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10.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한 규제의 개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남부권개발위원회는 <u>위원장 2명</u>을 포함하여 <u>30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남부권청장 3. 관계 시·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부권개발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환경·해양·도시·문화·관광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남부권개발사업 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남부권개발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남부권종합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남부권개발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남해안발전위원회는 <u>위원장 2명</u>을 포함하여 <u>30명 이내의 위원</u>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남해안청장 3. 관계 시·도지사 4.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등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남해안발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환경·해양·도시·문화 분야 전문가 등으로서 남해안발전사업 지역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한다. ⑥ 남해안발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국무조정실과 남해안종합개발청 소속 공무원 중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남해안발전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남부권개발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u>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남부권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①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부권종합개발청</u>(이하 “남부권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부권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u>중앙행정기관</u>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부권청에 <u>청장 1명과 차장 1명</u>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남해안발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u>국무총리 소속으로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u> (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단은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된 정책의 통합·조정 및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 등) ①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u>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남해안종합개발청</u>(이하 “남해안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 남해안청은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u>중앙행정기관</u>으로서 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③ 남해안청에 <u>청장 1명과 차장 1명</u>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④ <u>남해안청을 설치</u>를 위한 지역을 <u>선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u>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④ 남부권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남부권청장의 업무) 남부권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따른 남부권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제22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남부권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8. 개발지구 및 남부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9. 개발지구에서의 행위허가	<u>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u> ⑤ 남해안청의 조직·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남해안청장의 업무)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한 정책의 통합·조정·집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따른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개발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광역기반시설 및 부대시설의 설치 및 관리 5. 제22조에 따른 준공검사 6.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u>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u> 8. <u>투자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u> 9. 개발지구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발지구 및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11. 개발지구에서의 행위허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10.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사항 11. 개발지구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2. 개발지구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13.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 용한 수익사업 14.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부 권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② (생략)	12.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 리·운용에 관한 사항 13. 개발지구의 재해 및 재난의 관리 에 관한 사항 14. 개발지구내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협력과 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15.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 용한 수익사업 1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남해 안청장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1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7조(임직원의 파견 요청 등) ①·② (생략)

개발사업의 추진기구로서 정동만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남부권개발위원회와 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남부권종합개발청을 두고,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국무총리 소속의 남해안발전위원회와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남해안종합개발청을 두도록 하고 있음.

정동만의원안과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의 추진기구는 명칭은 다르나 조직 구성, 심의·업무 사항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 추진기구 비교 】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 남부권개발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 종합계획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개발지구 지정과 해제 ▶ 남부권 개발에 관한 주요정책 개발 ▶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 ▶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육성 ▶ 개발사업의 규제개선사항	○ 남해안발전위원회 - 국무총리 소속으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 종합계획 ▶ 광역기반시설설치계획 ▶ 개발지구 지정과 해제 ▶ 남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정책 개발 ▶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개발 ▶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의 관리·운용 ▶ 투자촉진지구의 지정·해제 ▶ 휴양·레저·관광산업의 개발·육성 ▶ 발전사업의 규제개선사항
○ 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 - 국무총리 소속	○ 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 - 국무총리 소속
○ 남부권종합개발청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 중앙행정기관 - 청장 1명, 차장 1명	○ 남해안종합개발청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 중앙행정기관 - 청장 1명, 차장 1명

남해안권을 배경으로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⁴⁰⁾, 해양수산부⁴¹⁾ 등 여러 부처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상호 간 중복투자 방지 및 연계를 위한 국가 주도의 위원회와 종합개발청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제정안

40)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 사업기간(2024년~2033년), 대상지역(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사업내용(해안·내륙·섬 자원을 활용한 여행 명소 조성 등)

41)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벨트 조성사업: 사업결과(2023. 2. 20. 해양수산부, 3개 시·도 업무협약 체결), 대상지역(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의 취지이며, 그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① 남해안권위원회(남해안발전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⁴²⁾에 따르면, 기존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되고,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하므로, 남부권개발위원회(남해안발전위원회)와 심의사항이 유사한 국토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를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② 남부권개발사업추진지원단(남해안발전사업추진지원단)의 설치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하부조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부조직법」에서 규정⁴³⁾하고 있으며,

42)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3)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 ④ (생략)

⑤ 행정각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장관과 차관(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차관보를 둘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제29조제2항·제34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본부장을 포함한다)·차장·실장·국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하는 보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수 있다. 다만, 그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은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남해안권 종합개발청(남해안종합개발청)의 설치와 관련하여, 남해안권은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고, 다른지역(서해안, 동해안, 접경지역 등)의 권역별 종합개발청 설치 요구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⁴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설치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으므로,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 제10호에 ‘남해안종합개발청’을 추가하려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제2200749호)」(2024. 6. 20. 발의)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4)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우주항공청
8. 「신행정부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아. 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에 관한 특례(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8조 및 제29조)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8조(남부권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부권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남부권관광진흥지구로 지정</u>할 수 있다. ② 남부권청장은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시·도지사는 남부권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남부권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남부권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8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남해안관광진흥지구로 지정</u>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절차 외에 다음 각 호의 협의 및 심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③ 시·도지사는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할 때에 관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종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남해안청장은 제3항에 따라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 요청 및 종합계획 변경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종합계획 변경 및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남해안관광진흥지구 지정과 종합계획 변경 결정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 ⑤ 남부권청장은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남부권청장은 남부권관광진흥지구가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남부권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 ⑤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부합할 것 2. 해안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관광·휴양 등의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양호할 것 3. 그 밖에 투자 활성화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면적, 투자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⑥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연공원법」 제9조에 따라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⑦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관광진흥지구가 제5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29조(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 포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u>완화</u>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남부권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남부권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u>완화</u>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시설의 종류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로 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제외한다)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②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③ 남해안관광진흥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8조 및 제29조는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남부권(남해안권)의 관광·휴양 거점 육성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남부권관광진흥지구(남해안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해당 지구에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입지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도 해양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른 특례의 적용을 규정⁴⁵⁾하고 있으며, 남부권(남해안권)은 섬·갯벌·해안 등 해양자원과 풍부한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관광·휴양 거점을 육성하려면 공공주도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한바, 남해안관광진흥지구의 지정과 이에 따른 특례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9조에서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산지관리법」 제12조⁴⁶⁾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45)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① 총 면적 10만㎡, ② 해안선으로부터 1,000m 이내 육지·도서 지역, ③ 민간투자 액수가 200억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① 개발 부담금 면제, ② 건폐율(20% → 40%) 및 용적률(80% → 100%) 완화(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특례가 적용됨.

46)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 16. (생략)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자원보호구역과 공원구역에 해당하는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⁴⁷⁾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⁴⁸⁾에 따라 공익용산지에 해당하고 「산지관리법」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⁴⁹⁾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7항제4호⁵⁰⁾에 따라 해당 공익용산

1. ~ 8. (생략)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47) 「산지관리법」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전산지(保全山地)

가. (생략)

나. 공익용산지: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

1) ~ 4) (생략)

5)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의 산지

6) ~ 14) (생략)

15) 그 밖에 공익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48)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조(산지의 구분) ③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1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 3. (생략)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5. ~ 7. (생략)

49) 「산지관리법」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50)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⑦ 법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를 말한다.

1. ~ 3. (생략)

지의 행위제한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해당 법률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29조제1항의 “「산지관리법」 제12조”와 제29조제1항제3호는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산지
5. ~ 7. (생략)

자. 강·섬관광활성화지구 지정 및 규제 완화를 위한 특례(정동만
의원안 제33조,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0조 및 제31조)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3조(강·섬 관광 활성화) ① 남부권 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강·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남부권 강·섬 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리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해제는 제28조를 준용한다. 제31조(남해안 강·섬관광 활성화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5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서 시행하는 남해안권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 ③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교통계획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0조 및 제31조는 남해안청장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을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고,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⁵¹⁾를 5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임.

행정안전부 통계⁵²⁾에 따르면,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섬은 465

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 ② ~ ④ (생략)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 가. 주거지역: 500퍼센트 이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다. 공업지역: 400퍼센트 이하
 - 라. 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 가.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 다.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52) 행정안전부, 유인도서 현황, 2021. 10.

개이고 그 중 남해안권(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섬은 75.7%에 해당하는 352개이며, 남해안권에는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으므로, 남해안 강·섬관광활성화지구의 지정으로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국토교통부는 건폐율·용적률 완화 특례에 대하여,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및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입법례⁵³⁾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에서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 내로 완화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53)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생략)

②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20퍼센트 포인트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차. 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정동만의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0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u>남부권청장은</u> 개발지구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남부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u>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2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 <u>남해안청장은</u> 개발지구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u>남해안 투자촉진지구로 지정</u>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31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① 남부권청장은 제30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남부권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3조(투자촉진지구의 지정 해제) ① 남해안청장은 제32조에 따른 투자촉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3조에 따른 남해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2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부권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국가 또	제34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 또는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남해안권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국가 또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관계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정동만의원안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는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개발지구 안에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남부권 투자촉진지구(남해안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투자촉진지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며,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권발전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

이는 개발(발전)사업에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이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전략적으로 내외국인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하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입주기업의 자금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⁵⁴⁾하고 있음.

54)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시·도지사는 제25조에 따른 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입주기업의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따라 입주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할 수 있다.

카. 산업 진흥 등(정동만의원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4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4조의2(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37조(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양·치유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3(해양·수산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6조(문화관광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문화관광산업 및 지역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38조(해양·수산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 해양·수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4조의4(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9조(수상레저산업 등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5(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0조(스포츠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6(웰니스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1조(웰니스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웰니스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7(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2조(미래에너지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미래에너지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8(물류산업의 진흥)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3조(물류산업의 진흥)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물류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9(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제44조(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의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4조의10(도심항공교통 도입)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의 도심항공교통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3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 ② (생략)	제45조(폐교재산 활용의 특례) ① ~ ② (생략)
제3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생략)	제46조(「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의 특례) (생략)
제37조(준용) (생략)	제47조(준용) (생략)

정동만의원안 제34조부터 제37조까지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는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남부권(남해안권)의 휴양 문화관광·해양수산·수상레저·스포츠·웰니스·미래에너지·물류산업 등의 진흥과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도심항공교통 도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지원 노력을 하도록 하는 내용임.

남부권(남해안권)의 기후·자연환경 등을 활용하여 특화된 산업과 중점개발 분야를 명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서도 첨단과학기술단지(제24조),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제28조), 문화관광산업의 진흥(제29조)에 대한 규정이 있는바, 제정안은 이를 좀 더 구체화·다각화하여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한바, 이를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산업 진흥 등에 대한 국토교통부 의견 】

산업 진흥	기관	제출 의견
물류산업의 진흥	국토교통부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물류정책 및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므로 특정 지역에 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류정책기본법」 제4조 ① 국가는 물류활동을 원활히 하고 물류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전체의 물류와 관련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동서연결 고속화철도 건설	국토교통부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기반으로 철도 투자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만큼 특정 법률을 통한 지원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도심항공교통 도입 ※ 정동만의원안 제34조의10	국토교통부	○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만큼 제정 실익이 부족함.

※ 자료: 국토교통부

타. 특별회계(정동만의원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8조부터 제54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8조(특별회계의 설치)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부권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48조(특별회계의 설치)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해안권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제3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
3. 개발지구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3. 개발지구의 국유재산 임대사용료, 매각대금 및 해당 재산에서 발생하는 그 밖의 수익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4. 출연금 또는 보조금
5. 차입금	5. 차입금
6.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금	6. 개발지구 내 토지 및 하천을 이용한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7. 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8. 그 밖에 수익사업의 수익금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매입 비용	1. 개발지구의 지정에 따른 용지의 조성 및 매입 비용
2.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2.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3. 남부권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의	3. 남해안권지역에 입지할 행정기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41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남부권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용자 7. 그 밖에 남부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 으로부터의 전입) (생략) 제41조(차입금) ① ~ ③ (생략) 제42조(예비비) (생략) 제43조(세출예산의 이월) (생략) 제44조(잉여금의 처리) (생략)	의 청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부지 매입, 건축 및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 4. 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5. 제51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용자 7. 그 밖에 남해안권발전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 ③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등 으로부터의 전입) (생략) 제51조(차입금) ① ~ ③ (생략) 제52조(예비비) (생략) 제53조(세출예산의 이월) (생략) 제54조(잉여금의 처리) (생략)

정동만의원안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8조부터 제54까지는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일반회계·다른 특별회계·기금 전입금 등으로 하며, 세출은 용지 조성, 광역기반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

비용 등으로 하는 내용임.

개별 부처가 일반회계로 남부권(남해안권)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경우, 부처별 예산 한도 내에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렵고, 계속사업이라도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등 재원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① 남부권(남해안권) 개발에 관한 특정세입이 없으므로 별도의 특별회계 설치의 불필요하고, ②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국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일원화하여 관리 중이므로 국유재산의 매각·대부 및 국유청사의 건축 비용 등은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⁵⁵⁾에 따라 특별회계는 법률로써 설치하되, 동 법 별표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는바, 별표 1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2024. 6. 20. 발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55)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① 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파. 개발사업을 위한 지원(정동만의원안 제45조부터 제58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5조부터 제69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45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u>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u>」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및 <u>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u>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부권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남부권개발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지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46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남부권개	제55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하천법」, 「초지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용, 하천 점용료·사용료,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남해안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지구의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제56조(보조금 교부 등) 국가는 남해안권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47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57조(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협력기업”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매입비, 사용료, 대부료 또는 건축비 2.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 3. 의료시설·교육시설·주택 등 각종 외국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4.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자금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협력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하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사용허가 등을 하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4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4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개발지구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지구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협력기업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제58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9조(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및 그 밖에 개발지구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지구의 국공유 토지 또는 건물 등을 「국유재산법」 제35조·제46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31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0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51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52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 등을 받은 토지 위에 공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등의 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67조(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68조(습지보호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60조(민자유치사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지구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2.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시설 등의 매입 업무의 대행 3.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점용허가권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점용허가권자에게 점용허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점용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3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남부권청장은 남부권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54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55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남부권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허용된 구역은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한다. 제56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57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생략)	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1조(특별건축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남해안청장은 남해안권발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69조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일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62조(보전산지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산림청장은 개발지구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지구의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9조(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남해안권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광역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허용된 구역은 시·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한다. 제63조(토지이동 신청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제64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고시기간 등에 관한 특례) (생략)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8조(지역기업의 우대) (생략)	제65조(지역기업의 우대) (생략) 제66조(예비타당성조사 등의 면제) 국가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 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할 수 있다.

1) 부담금 감면

정동만의원안 제45조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5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남부권개발사업(남해안권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개별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⁵⁶⁾」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대다수의 특별법⁵⁷⁾에서도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남부권(남해안권)의 원활한 개발사업

56)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2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하천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5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부담금 등의 감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2조(지방세 및 부담금의 감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시행을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서는 부담금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경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부담금 감면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부담금 감면 사항	기관	제출 의견
총괄	기획재정부	○ 부담금 감면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며, 타 법령에서 개별 부담금의 감면조항을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 부담금 각 근거 법령 외 별도 법률에 감면조항을 규정하는 것은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투명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취지에 미부합 ○ 구체적 부담금 감면 대상·기준은 각 부담금별 소관부처가 부담금 부과목적 및 취지, 타 지역 및 사업과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후,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근거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 감면 사항	기관	제출 의견
개발부담금	국토교통부	○ 개발부담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개발부담금 제도의 정책실현 목적과 준조세적인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고,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물류단지 조성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등 다양한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서는 지자체 귀속분 경감 제도가 있으므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국토교통부	○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 유발 시설물 소유자에게 매년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일회성으로 감면하는 성격의 부담금이 아님.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 정동만의원안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은 사업의 공익성, 개발이익 환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부분의 구역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훼손지를 복구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 및 감면 규정은 없음. ○ 또한, 엄격하게 관리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특성상 서민 공공주택사업 등 국책사업에도 예외가 없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부	○ 동 특례 조항은 생태계를 훼손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자에게 비용을 부과하여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생태계보전부담금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 남부권(남해안권) 관할구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개발사업에만 부담금을 감면할 경우, 다른 개발사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임.

부담금 감면 사항	기관	제출 의견
환경개선부담금	환경부	○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서 자동차는 그 성격상 남부권(남해안권) 개발사업 지역 외에도 광범위한 지역을 운행하며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이 사업시행과 직접 연계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농지보전부담금	농림축산식품부	○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농지법령(「농지법」 제38조제6항 및 「농지법시행령」 제52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법령에 부담금 감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법시행령」 제52조의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부담금이 감면되지 않음.
대체초지조성비	농림축산식품부	○ 다른 법령에서 대체초지조성비 감면을 규정할 시 「초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특별법에 따른 개별 사업이 중요 산업시설(「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등), 공용시설 등에 해당할 경우 폭넓게 감면이 가능함.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해양수산부	○ 특별법에 감면 근거를 설정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감면 여부는 다른 부담금과 같이 타 분야와의 형평성, 감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각의 부담금 근거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자료: 국토교통부

2)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6조는 남해안권 개발·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국가재정법」 제38조⁵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해안권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①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 전체적으로

58)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초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종합적인 시각에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개별법보다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면제요건, 선정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는 「국가재정법」 체계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고, ② 남해안권 개발·발전과 관련한 불특정 사업에 대한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형해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③ 유사사례 등으로의 법제화 파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3) 그 밖의 지원 및 특례조항

정동만의원안과 문금주·정점식의원안은 남부권(남해안권)의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보조금 교부, 자금 지원,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등의 특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등 각종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대하여 관련 부처에서 다수 의견을 제출한바, 관련 부처의 의견을 고려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자금지원·특례 등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 】

특례 사항	기관	제출 의견
국·공유재산 수익계약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매각 ※ 정동만의원안 제32조·제47조·제49조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34조·제57조·제59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경쟁입찰이 기본원칙이며, 수익계약 허용 대상이 광범위하여 국유재산의 수익 매각이 과도하게 허용될 우려가 있음. ○ 공유재산 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현행 공유재산법령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특례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영구시설물 축조 ※ 정동만의원안 제49조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9조	기획재정부	○ 향후 행정목적 활용이 제한되는 영구시설물 축조는 엄격히 제한되나, 동 특별법안상 적용대상이 광범위하다는 문제가 있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 정동만의원안 제47조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7조	고용노동부	○ 고용부에서 추진 중인 “고용장려금”사업을 통해 남부권(남해안권)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기존 사업과 중복의 우려가 있음. ○ 투자촉진을 위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방안이 적합함.
보전산지 지정해제 ※ 정동만의원안 제54조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2조	산림청	○ 유사 입법례(「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를 고려하여, 개발지구 내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권한을 개발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사업지를 실제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것이 개발지구의 효율적 개발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특례 사항	기관	제출 의견
개발제한구역 지정 ※ 정동만의원안 제55조 ※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9조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공적 필요성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미래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과 도시 성장관리를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민공공주택공급을 위한 대책사업도 예외없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 중임. ○ 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시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고, 유사입법 채도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붕괴될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부권(남해안권)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함. ○ 다만,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가능총량 적용 예외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동 제도를 활용할 경우 제정안의 목적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자료: 국토교통부

참고로, 정동만의원안 제49조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9조는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⁵⁹⁾에도 불구하고 토지·건물 등의 사용허가

59) 「국유재산법」

제35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허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제46조(대부기간) ①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로 한다.

1. 조립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와 그 정착물: 20년

2. 대부 받은 자의 비용으로 시설을 보수하는 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토지와 그 정착물: 5년

4. 그 밖의 재산: 1년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1회만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대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중앙관서의 장등에 신청

등의 기간을 50년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⁶⁰⁾에 따라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는 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고, 별표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별표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추가하려는 「국유재산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정점식의원 대표발의)」(2024. 6. 20. 발의)이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8조 및 제59조의2에 따라 개발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은 3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20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6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하. 보칙(정동만의원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59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남부권청장은 개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남부권청장은 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남부권청장은 개발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0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지정의 제안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남해안청장은 개발지구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60조(감독) ①·② (생략)	제71조(감독) ①·② (생략)
제61조(청문) (생략)	제72조(청문) (생략)
제62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73조(권한의 위임) (생략)

정동만의원안 제59조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제70조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남부권청장(남해안청장)이 개발지구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임.

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조항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도 규정⁶¹⁾되어 있으며, 개발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투기와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보임.

61)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3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도지사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거. 부칙

정동만의원안	문금주·정점식의원안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동만의원안 및 문금주·정점식의원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먼저, 시행일은 하위 법령 제정, 조직 구성, 제도 준비 등을 고려할 때, 제정안의 시행일은 촉박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그리고, 제정안이 특정 지역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점과 현행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의 유효기간은 제정(2007. 12.)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고, 한 차례 연장(2018. 12.)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점 등을 고려하여 동 제정안에 대한 유효기간 설정 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정안에서 행정처분, 처벌 등의 대상이 되는 개발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⁶²⁾의 ‘환경’이라는 공익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

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로 보이므로, 제정안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추가하는 ‘다른 법률의 개정’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590

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